

달성군 화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 동의안

의안 번호	2519
----------	------

제출일자 : 2024. 6. 13.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된 직업생활 영위와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자 전문성 있는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화원권역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비 고
달성군 화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화원읍 비슬로 506길 14, 달성중 학교복합시설 내	630.94m ²	※ 시설준공 : 2025년 7월 예정

나.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무
- 장애인 직업훈련 및 직업생활 시설 운영 전반
- (가칭)달성군 화원 장애인재활작업장 시설관리 전반

다. 위탁기간 : 5년(2025. 7. 1~ 2030. 6. 30) ※시설준공에 맞춰 변경 가능

라.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 「동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

마.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별도 첨부

바. 향후일정

- 2024. 7. : 민간위탁 공개모집
- 2024. 8.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2025. 7. : 건물 준공 및 화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400백만원 정도(보조금 범위 내 지원)

- 위탁 금액의 세부적인 사항은 수탁기관 선정 후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담당부서(희망지원과) 검토 후 보조금의 범위 내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3. 30., 2019. 1. 15.>

⑤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개정 2011. 3. 30., 2019. 1. 15.>

⑥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시설의 종류 및 업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하며, 그 업종은 장애인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한다.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재활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한다.(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에서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위탁운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서

Ⅰ 기본 검토사항

대 상 사 무	달성군 화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운영
민 간 위 탁 추 진 목 적	○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된 직업생활 영위와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자 전문성 있는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화원권역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위 탁 근 거	○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59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4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시행규칙」 제2조
위 탁 내 용	○ 추진경위 - 화원지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권역별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 ○ 위탁기간: 5년 ○ 위탁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훈련 및 직업생활시설 운영 전반 - 달성군 화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시설관리 전반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불가 - 직접 운영 시 문제점 · 재활시설 운영 및 직업훈련 관리자의 직접 채용이 어려움 · 장애인 직업훈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적 정 성 점 토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확보 가능 - 정부 정책에 맞는 맞춤형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한 안정성 확보 ○ 경제적 효율성 : 확보 가능 - 적절한 운영 예산 편성으로 경제적 효율성 확보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확보 가능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다년간 운영하여 쌓은 노하우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해당 기관의 자원을 그대로 활용 가능 ○ 성과 측정의 용이성 : 확보 가능 -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추진실적을 통하여 성과 측정 가능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확보 가능 - 연간 1회 이상 민간위탁사무 자체 감사를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점검 및 보조금 정산
수 탁 기 관 선 정 방 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위탁대상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위탁방법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 「동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
민 간 위 탁 금 *예산지원형 위탁시 기재	○ 신규 위탁 : 연간 위탁금 예상액(400,000천원) - 위탁 금액의 세부적인 사항은 수탁기관 선정 후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담당부서(희망지원과) 검토 후 보조금의 범위 내 지원

기대효과 및향후 계획	○ 기대효과 - 화원지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권역별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 - 전문기관 운영 위탁으로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 ○ 향후계획 - 2024. 6. : 민간위탁 모집공고 - 2024. 6. ~ 2024. 7.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체결 - 2024. 7. ~ 2025. 6. : 건물 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 - 2025. 7. : 건물 준공 및 화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
전문가 의견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예정

② 시설위탁 시 작성

시설개요	시설명	(가칭)화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소재지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506길 14, 달성중 학교복합시설 건물 내		
	시설규모	연면적 630.94㎡		
	시설용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준공일자	2025. 7. (예정)	개원일자	2025. 7. (예정)
	이용대상	화원 지역(달성군) 장애인	수용인원	40명 정도
	보유장비	사무실(가구, PC 등), 직업재활시설 관련 장비 (위탁기관 선정 후 업종을 고려하여 결정)		
위치도				
지역여건	○ 국도5호선을 인접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여 지리적 접근성 용이 ○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일환으로 건물 1층~4층까지 문화, 복지, 교육 시설로 구성하여 지역 정주여건 개선			